

## ※ 외환관련 총 13 개 약관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HSBC 전자외환 거래시스템 약정서	<p>제 4 조 시스템 및 서비스의 사용</p> <p>⑧ HSBC 는 언제든지 고객에게 [ ]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시스템 및 서비스를 중지 또는 접근제한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단, 가. 시스템 및 서비스의 중지 또는 접근제한이 HSBC 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예를 들면, 기술 혹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경우 또는 나. 고객이 이 약정서상의 고객의 의무 또는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행위한 경우(위 제4 조 제4 항의 금지사항 포함), 위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p>	<p>제 4 조 시스템 및 서비스의 사용</p> <p>⑧ HSBC 는 언제든지 <u>고객에 대한 최소 14 일전의 서면 통지로써</u> 시스템 및 서비스를 중지 또는 접근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단, 가. 시스템 및 서비스의 중지 또는 접근제한이 HSBC 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예를 들면, 기술 혹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경우 또는 나. 고객이 이 약정서상의 고객의 의무 또는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행위한 경우(위 제4 조 제4 항의 금지사항 포함), 위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p>
	<p>제 6 조 기간 및 종료</p> <p>② 기타 권리나 구제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HSBC 는 고객에 대한 5 일전의 서면 통지로써 언제라도 시스템 및 서비스의 사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HSBC 가 일상적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거나 고객이 거래계약을 위반한 경우 고객에 대한 서면통지로써</p>	<p>제 6 조 기간 및 종료</p> <p>② 기타 권리나 구제조치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HSBC 는 고객에 대한 <u>최소 14 일전</u>의 서면 통지로써 언제라도 시스템 및 서비스의 사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HSBC 가 일상적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거나 고객이 거래계약을 위반한 경우 고객에 대한 서면통지로써</p>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p>즉시 시스템 및 서비스의 사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p> <p>③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발적인 합병이나 구조조정 이회의 사유로 도산하거나, 상대방이 채권자들과 일반적인 화의 또는 화해를 체결하거나 이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어느 관할권에서든지 상대방에게 전술한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p>	<p>즉시 시스템 및 서비스의 사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p> <p>③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발적인 합병이나 구조조정 <u>이외</u>의 사유로 도산하거나, 상대방이 채권자들과 일반적인 화의 또는 화해를 체결하거나 이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어느 관할권에서든지 상대방에게 전술한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p>
	<p>제 9 조 기타사항</p> <p>① HSBC 는 고객에 대한 최소 14 일 이전의 통지로써 언제라도 이 약정서의 규정 및/또는 사용자설명서를 개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습니다.</p>	<p>제 9 조 기타사항</p> <p>① <u>HSBC 는 이 약정서의 규정 및 또는 사용자설명서 내용을 개정하거나 거래처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HSBC는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u></p> <p>② <u>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HSBC 는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u></p>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p><u>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③ HSBC 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④ 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 <p>⑥ 각 당사자는 이 약정서의 규정과 관련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비전속적 관할권에 따르기로 하며, 또한 이약정서의 조건과 관련한 소송이나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위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이나 법적절차의 재판지에 대한 결정을 사유로 각 당사자가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당해 소송이나 법적절차가 불편한 법정지에서 제기되었다는 주장을 포기하며, 나아가</p>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p>당해 소송이나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당해 법원이 해당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니다.</p>	<p>관련하여 당해 법원이 해당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니다.</p>
Instant@device 와 신용장 보관 서비스 약관	<p>제 7 조 (계약의 해지) 7.3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1 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해지요청이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p>	<p>제 7 조 (계약의 해지) <u>7.3 본 계약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본 약정은 효력을 유지한다.</u></p>
선적서류 및/또는 수출환어음 재매입거래약정 서	<p>제 11 조 기타 2. 본 약정서의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약정 만료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의 약정해지 통보가 서면으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p>	<p>제 11 조 기타 <u>2. 본 약정서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본 약정은 효력을 유지한다.</u></p>
수입 신용장 재개설등에 따른 의뢰 및 중계에 관한	<p>2.2. ‘갑’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개설요청을 받고 ‘을’에게 스위프트 전문으로 재개설요청을 함으로써,</p>	<p>2.2. ‘갑’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개설요청을 받고 ‘을’에게 스위프트 전문으로 재개설요청을 함으로써,</p>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약정서	<p>.....</p> <p>또한 '갑'은 '을'이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화물 선취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 신청서에 따로 기명 날인하지 아니하더라도 개설 의뢰인이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도 연대하여 보증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이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예치 받은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 보증금(Marginal Deposit)을 개설 의뢰인의 '을'에 대한 다른 채무에 우선 충당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 및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 신청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한다.</p>	<p>.....</p> <p>또한 '갑'은 '을'이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화물 선취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 신청서에 따로 기명 날인하지 아니하더라도 개설 의뢰인이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도 연대하여 보증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이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예치 받은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 보증금(Marginal Deposit)을 개설 의뢰인의 '을'에 대한 다른 채무에 <u>우선 충당함에 동의하며</u> 신용장 개설 신청서 및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 신청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한다.</p>
수입거래약정서	<p>제 3 조 담보</p> <p>2. 수입화물이 멸실, 훼손, 변질, 분실 감가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수입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p>	<p>제 3 조 담보</p> <p>2. <u>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입화물이 멸실, 훼손, 변질, 분실 감가 등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용이 악화된 경우</u>, 수입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p>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수출거래약정서	<p>제 4 조 담보</p> <p>3. 수출화물이 멸실, 훼손, 변질, 분실, 감가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수출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p>	<p>제 4 조 담보</p> <p>3. <u>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화물이 멸실, 훼손, 변질, 분실, 감가 등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신용이 악화된 경우</u>, 수출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p>
약속어음매입 기본약정서 (비소구 조건)	<p>2. i) 유효성: 본 요청서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상기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본 서한은 효력을 유지하며, 이는 은행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p>	<p>2. i) 유효성: 본 요청서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u>최소 14 일 이전의 서면 통지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u>. 그러나 상기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본 서한은 효력을 유지하며, 이는 은행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p>
약속어음매입 기본약정서 (소구조건)	<p>2. i) 유효성: 본 요청서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상기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본 서한은 효력을 유지하며, 이는 은행이 조건에</p>	<p>2. i) 유효성: 본 요청서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u>최소 14 일 이전의 서면 통지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u>. 그러나 상기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본 서한은 효력을 유지하며, 이는 은행이 조건에</p>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양도담보 계약서 (수입거래용)	<p>제 6 조 담보목적물의 처분</p> <p>담보 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 방법, 가격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같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 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p>	<p>제 6 조 담보목적물의 처분</p> <p>①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3 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 3 취득자를 말합니다.</p> <p>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p> <p>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p> <p>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p> <p>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p>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p>②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담보권실행의 방법</li> <li>2. 피담보채권의 금액</li> <li>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li> <li>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li> </ol>
외환거래기본약관	<p>제 8 조 (약관의 변경)</p> <p>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1 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p>	<p>제 8 조 (약관의 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은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li> <li>2.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li> </ol>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p><u>은행은 이를 서면 등 신청인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의 효력발생일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u> 다만, 기존 신청인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u>3.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신청인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u>4. 신청인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u></p>
외환거래약정서	제 7 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② 환율의 변동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처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추가 예치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② <u>거래처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u> 거래처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추가 예치한다.
	제 11 조 은행에 의한 해제	제 11 조 은행에 의한 해제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p>① 거래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및 제 3 항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별 외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파산, 화의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개별외환계약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은행의 통지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① 거래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u>제 7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u>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거래처에게 <u>최소 14 일 이전의 서면 통지</u>로써 모든 개별 외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1 항 <u>제 3 호(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u>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개별외환계약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u>에</u> 은행의 통지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자동대체약정서	<p>제 5 조 (약정 해지)</p> <p>1. 마지막 자동대체거래일로부터 1년간 자동대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 본 계약은 해지됩니다.</p> <p>2. 제 1 조에서 지정한 원인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본 약정은 해지됩니다.</p>	<p>제 5 조 (약정 해지)</p> <p>1. <u>본 약정에 의한 자동대체가 1년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최소 14일 이전의 서면 통지</u>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2. 제 1 조에서 지정한 원인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u>은행은 최소 14일 이전의 서면 통지</u>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	<p>제 12 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p> <p>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p>	<p>제 12 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p> <p>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p>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p>3.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p>	<p>3. 기타 <u>이용자가 약관내용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u>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u>이 경우 은행은 최소 14 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두고 통지하기로 한다.</u></p>
	<p>제 14 조 [약관변경]</p> <p>1.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1 개월 전에 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1 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p> <p>2. 게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의의제기가 없는 경우 약관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p>	<p>제 14 조 [약관변경]</p> <p>1. <u>은행은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u></p> <p>2. <u>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의 효력발생일 전 최소 30 일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3. <u>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u></p>

##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p><u>한다.</u></p> <p><u>4.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u></p>